



■ 2023학년도 2학기 1,2학년 2차 고사 안내 ■

1. 고사 일정 및 이의신청, 재시험 날짜 공지(재시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문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실시합니다.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시행 지침에 의해 문항 오류가 발생하면 '재시험'이 원칙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제1,2학년 2차고사

교 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예비령	08:30 ~ 08:35	09:35 ~ 09:40	10:45 ~ 10:50	11:55 ~ 12:00
본령	08:35 ~ 09:25	09:40 ~ 10:30	10:50 ~ 11:40	12:00 ~ 12:50
12. 05 (화)	1학년	통합과학		한국사
	2학년	영어 II	지구과학 I	사회·문화 물리학 I
12. 06 (수)	1학년			영어
	2학년	일본어 I / 중국어 I	경제수학 / 기하	생활과 윤리
12. 07 (목)	1학년	수학		기술가정
	2학년	독서	화학 I	동아시아사
12. 08 (금)	1학년	국어		통합사회
	2학년	수학 II	한국지리	생명과학 I

이의 신청 기간 및 재시험 일자 : 이의 신청 기간은 시험 종료 후 휴무일을 제외한 3일. 고사가 끝나기 전 문항 오류를 발견하여 재시험이 확정된 경우 고사 기간이 끝나기 4교시 시험 이후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사가 끝날 때까지 문항 오류를 발견하지 못 했거나 고사가 끝나고 이의신청이 와서 심의 결과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재시험일은 12월 14일로 미리 확정하여 공지합니다. (12월 14일에는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시험은 1~2 문항만을 다시 보는 것이므로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2. 고사 직전이나 고사 기간 도중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어 결시(인정결로 처리)를 선택하거나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 유형과 인정점(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부정행위 유형	인정 비율(인정 점수)
◆ 문제지 유출을 이용한 부정행위	◆ 0점
◆ 문제지 도용을 이용한 부정행위	◆ 0점
◆ 집단부정행위를 주도한 행위	◆ 0점
◆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 0점
◆ 통신기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쪽지(메모)를 이용한 부정행위	◆ 이용전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이용후 : 최하점의 50%
◆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정답쪽지를 보낸 부정행위(동조자)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남의 답을 본 부정행위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 정답쪽지를 받아본 부정행위	◆ 최하점의 50%
◆ 종료령이 울리고 답안을 고친 경우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

종료령이 울리고 답을 고치느니 차라리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괜히 고치려다가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통신기기를 깜빡 잊고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반드시 아침에 제출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4. 고사 불참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재시험이 아닌 정규 시험의 경우)

①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

②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결시고사와 가장 가까운 고사를 기준으로 한다.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 나머지 응시 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 결시 고사와 가장 가까운 이전 고사에서 해당 학생이 획득한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3. 이전 고사의 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출한다.

③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 65 = 62.3$: 인정기준점수
-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 3) 인정기준점수 $\times 0.8$ (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④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9) 전입생, 학기 중 계열변경 학생 등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단, 해당 시험기간 중 1회에 한함.)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라. 부정행위 유형의 따른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⑤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 관련 학생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및 인정점 부여

1)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가 중지가 권고 되나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2)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3)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사전 안내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예-1교시응시 2교시 미응시는 불가능)

※ 모든 증명서는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병원에서 실시)만 인정함.

※ 확진자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모두(무증상, 의심 증상) 시험 응시가 원칙임.

※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음.